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703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아파트리모델링조합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구합124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8,304,030원, 지방교육세 36,564,9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3행의 "17,706/18,329" 뒤에 "(다만, 원고를 설립한 이 사건 아파트 가내지 마동 소유자들의 개별 호실별 대지지분의 합계는 17,703/18,329이다)"를 추가하고, 제15~16행의 "(이하 '이 사건 상가동 부지'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상가동 부지'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와 이 사건 상가동 부지를 합쳐 '이 사건 각 부지'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4~5행의 "지방교육세 36,564,970원" 뒤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 및 제8 내지 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 전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 중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그 지분을 취득할 때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유물 분할을 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해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지분은 18,329분의 626 지분이고, 등기부에도 '공유자 지분 18,329분의 626'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 중 18,329분의 626 지분만이 위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제4쪽 제10~12행의 "리모델링된 … 산정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거 시가로 조사·산정하되 시·군·구에서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가격은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가격을 안분하였다.』

○ 제8쪽 제1행의 "구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23행을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로 고친다.

나. 판단

1)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가) 부동산의 취득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5호에서 1천분의 23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 소정의 취득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형 중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 일정한 경우에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의 취득세율 및 세율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의 범위 내'에서의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위 각 규정에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별도로 정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한편,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광업권·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되었고(제105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었다(제124조). 그리고 당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의 의미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제104조,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소정의 '취득'의 정의와 일부 표현상의 수정 외에는 동일하다), 제110조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라는 표제 하에 일정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과세 대상 중에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도 포함시키고 있었으므로(제110조 제4호), 그 결과 당시에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만이 부과되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으며, 당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은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이었다(제131조 제1항 제5호). 이때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한 것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중요시했기 때문인데,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위 전부 개정 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

라)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종전과 달리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득세율에 관하여 원칙적인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외에 세율의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가 함께 적용되어 결국 구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세율도 종전의 등록세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과 동일한 1,000분의 3으로, 위 전부 개정 전 지방세법 하에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부과되던 등록세와 구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그 실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한 개의 공유물 중 특정 부분 또는 여러 개의 공유물 중 특정 공유물 전체 중에서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부분만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원래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함하여 납세의무자가 취득하는 공유물 전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 전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 먼저, 갑 제1호증의 4,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에 관한 종전의 대지권 규약이 폐지되어 원고가 2013. 11. 29.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에 관한 대지권 표시등기가 말소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를 대지권 표시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는 공동주택부지로서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리모델링한 아파트와 분리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 중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는 원래 공동주택부지였는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이 사건 아파트 가 내지 마동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진 후 리모델링된 아파트 단지와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에 관한 대지권 표시등기가 일시적으로 말소된 것이고, 원고가 2011. 5. 20.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 상에 리모델링한 아파트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후 2015. 3. 20.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에 관하여 대지권 표시등기가 다시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②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에서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주택법(2013. 8. 6. 법률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 반대해석상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관하여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에 관하여 대지권 규약을 폐지한 후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를 분할한 이상 그 시가표준액은 아파트와 분리된 토지인 것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하여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수동의 건물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다른 수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에서 따로 분리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2010. 6. 25. 등기선례 제201006-3호 등 참조), 위와 같은 대지의 분할이 집합건물법 제8조에 의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절차를 거쳐 취득한 대지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때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앞서 본 구 지방세법상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의 과세표준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2013년 기준 호실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호실별 토지가격 상당액을 산출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가격으로 하되, 이를 위해 호실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배분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건물가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정할 수 있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에 의하면, 구청장은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포함)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호실별 공동주택가격 산정방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및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을, 토지가격 산정방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을, 건물가격 산정방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각각 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용한 것이고, 공동주택가격 중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배분 비율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로 인하여 함께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일괄하여 산정하고[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53호) 제16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공동주택가격 중 토지가격의 비율을 구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위 등록면허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토지·건물가격의 배분 비율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이 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대한 조항이므로 이 사건에서 건물가격 역시 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의 시가조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호실별 공동주택가격은 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하되, 위 공동주택가격 중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배분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건물가격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위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대지사용권과 건물부분을 일괄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동주택의 감정평가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공동주택가격의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중 토지와 건물가격의 배분 비율 계산은 별도로 이루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져야 하고, 달리 공동주택 중 건물만의 가액 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의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③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 상의 리모델링된 아파트 중 103동 1006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배분 비율이 3:7로 되어 있기는 하나, 배분 비율을 그와 같이 정한 구체적인 근거에 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감정평가서에서의 배분 비율(3:7)이 피고가 계산한 비율(8:2)과 차이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계산한 배분 비율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한국부동산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공동주택의 구분평가 시 토지·건물 배분 비율에 관한 연구'의 토지·건물 배분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은 이유로 토지의 배분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중 강남구가 속해있는 동남권의 토지가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 동남권의 토지와 건물의 배분 비율은 9:1 또는 8:2에 이르렀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산한 배분 비율도 이 범위에 속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5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